

# 학 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문화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대학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우리 대학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에 둔다.

**제4조(모집단위 및 신입생기준 입학정원)** ① 우리 대학은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둔다.

② 전문학사과정에 두는 전공(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의한 정원 외 학생 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1.) (개정 2015.3.1.) (개정 2016.3.1.)

스 쿨(과)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전공	160	3년제
만화콘텐츠	만화창작전공	160	3년제
게임콘텐츠	게임전공	160	3년제
푸드	푸드스쿨	300	3년제
	- 조리전공		
	- 식품영양전공		
	- 외식경영전공		
-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	패션스쿨	90	3년제
	- 패션디자인전공		
- 스타일리스트전공			
뮤지컬	뮤지컬스쿨	120	3년제
	- 뮤지컬연기전공		
	- 무대디자인·제작전공		
	- 조명디자인전공		
- 음향디자인전공			
모바일	모바일통신전공	66	2년제
	스마트미디어전공	40	3년제
	모바일보안전공	30	2년제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96	3년제
합 계		1,222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1.) (개정 2015.3.1.) (개정 2016.3.1.)

스 쿨	설 치 학 과	입학정원	학제
애니메이션	만화애니게임학과	150	1년제
만화콘텐츠			
게임콘텐츠			
뮤 지 켈	공연예술학과	40	1년제

④ 스쿨(계열)내 전공(학과) 및 세부코스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우리 대학 전문학사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나눈다.

다만, 수업을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1학기당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 ②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총장은 비상재해와 같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나 유연한 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휴업일 이라도 필요한 경우는 수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4장 입 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11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21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① 전문학사과정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전문대학 3년제를 졸업한자(입학학기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50조2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과 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관련과를 졸업한자로 한다. (개정 2013.3.1.)

**제13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입학전형)** ① 전문학사과정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 1.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 2. 대학수학능력시험
- 3. 대학별 고사
- 4. 면접고사
- 5. 실기고사
-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성적자료
- 2. 대학별고사
- 3. 면접고사
- 4. 실기고사
- 5. 기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4조2(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 모집요강에 정하는 기간 동안 산업체에 근무중인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전형관리는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15조2(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3(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3.31.)

**제16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7조(입학취소)** ① 제14조(입학전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입학을 취소한다.

② 우리 대학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③ <삭제>

**제18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1학기 또는 제3학년 1학기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및 대학의 졸업자와 외국에서 수학한 자는 제1학년 2학기에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8.1.)

② 편입학은 각 전공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편입학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전과)** ①,②,③,④,⑤ <삭제>

**제20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전공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유아교육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허가한다. (개

정 2012.8.1.)

③ 폐과된 학과의 제적생은 부칙에 명기한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21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장 휴학 및 복학, 자퇴, 제적, 전과

**제22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당 수업일수 1/4(3주)를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는 휴학 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단, 수업연한 초과자의 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

④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⑤ 정규학기의 등록을 하고도 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에 해당될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복학)** ① 제22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3주(21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수업연한이 2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 후 복학한 학생은 3년제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2년제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⑤ 복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학기 개시 후 3주(21일)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재학 중 정당한 사유없이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하지 않은 자(개정 2016.10.31.)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24조의2(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초 또는 2학년 1학기 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3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고,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스쿨에서 1학년 2학기 초 전과를 불허 할 수 있고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모집정지 전공(과) 학생의 전과 시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8.1.) (개정 2013.3.1.) (개정 2015.3.1.)

② 전과의 전공(과)별 입학정원은 전입전공(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하고, 전출정원은 전출전공(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2.8.1.)

③ 전과한 자는 전출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폐과된 전공(과)의 학생의 경우 타 전공으로 전과 할 수 있다.

⑤ 2년제에서 3년제, 3년제에서 2년제로 전과 할 수 있다. 단, 유아교육과의 전입은 불허한다.

⑥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입학과와의 등록금이 전출학과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불한다.

###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고, 전공의 특성에 따라 전공교과에 실험실습을 과한다.

②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이에 포함될 수 없는 과목의 경우 일반선택(전공 및 교양의 영역인정 없이 학점만 인정)으로 둘 수 있다. 각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6.10.31.)

③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매 학년도 교육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학, 전과, 유급 및 재입학자 등 학적 변동된 자는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다만, 대내의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 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8.1.)

⑤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⑥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2(기타 교육과정)** ① 정규 교육과정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타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매대학 연구 및 공동교육과정
2. 해외교육기관 연수 및 교육과정
3. 해외인턴십 교육과정
4.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5. <삭제>
6. 기타 정규교육과정외의 교육과정(또는 프로그램)
7. 대학과목선이수제 교육과정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6조(특별과정운영)** ① 우리 대학에는 1년 이내의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특별과정은 우리 대학에 설치된 전공과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6조의2(시간제등록생 운영)** ① 우리 대학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생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는 모집할 수 없다. (개정 2013.9.1.)

- ② 시간제등록생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13.9.1.)
- ③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한다. (개정 2013.9.1.)
- ④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1.)
- ⑤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
- ⑥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1.)
- ⑦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9.1.)

**제26조의3(학점은행제)** ① 우리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3년제의 경우 12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중 우리 대학에서 48학점 (3년제의 경우 65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우리 대학에서 36학점(3년제의 경우 4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여야 한다.

② 기타 학점인정과정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4(전공심화과정)** ① 우리 대학에는 고등교육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5(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1.)
- ③ <삭제> (개정 2013.3.1.)
- ④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⑤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관리를 위해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⑥ <삭제> (개정 2013.3.1.)

**제26조의6(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우리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9.1.)

**제26조의7(계약학과 지원자격 및 선발)** <삭제> (개정 2013.9.1.)

**제26조의8(계약학과의 정원)** <삭제> (개정 2013.9.1.)

**제26조의9(계약학과의 등록금)** <삭제> (개정 2013.9.1.)

**제26조의10(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삭제> (개정 2013.9.1.)

**제26조의11(계약학과 학생의 퇴직 및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삭제> (개정 2013.9.1.)

**제27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단계 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의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21조 ①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전문학사 학위 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점 당 시수비율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80학점(2년제 전공) 또는 120학점(3년제 전공)으로 하고, 이중 교양 이수학점은 2년제 10학점, 3년제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 또는 24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1.)

④ 원격교육(위성, 인터넷)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상교육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2(계절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하로 한다.
- ③ 계절수업 등은 제9조(수업일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④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3(실습학기제)** ① <삭제>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제28조의4(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①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정원 외 전형 전문대졸이상자로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선택 과목을 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④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하여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을 최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의 범위에서 취득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3.1.)
- ⑤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에 따른 창업실습교과 취득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신설 2015.3.1.)
- ⑥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8조의5(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2년제 80학점(3년제 120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③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 ④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학위과정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는 80학점,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2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 ⑤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28조의6(집중수업)** ① 제28조의2(계절수업)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9조(수업일수)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3.1.)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제29조의2(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제7장 성적평가, 진급, 졸업 (개정 2013.3.1.)

**제30조(평가시험)** ① 각 교과목 총 수업일수의 1/4(3주)를 초과하여 무게출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스쿨원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③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31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 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평가는 P급제로 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 ~ 95	4.5
A0	94 ~ 90	4.0
B+	89 ~ 85	3.5
B0	84 ~ 80	3.0
C+	79 ~ 75	2.5
C0	74 ~ 70	2.0
D+	69 ~ 65	1.5
D0	64 ~ 60	1.0
F	59점 이하	0
P	불계	

-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스쿨별 특성에 맞게 성적사정회를 시행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제32조(진급)** 이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위 학년에 진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진급사정회에서 결정된 자로 한다.

**제33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경우 성적을 취소한다.

**제34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졸업, 수료, 취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8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1-1호 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졸업을 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학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3.1.)

**제35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 28조의 5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년 과정수료 :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120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2. 2년 과정수료 :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80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3(명예학위 수여)** 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우리 대학의 명예를 높였거나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유급)** 동일학년의 1학기에 2학기에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유급시키고 보호자 및 본인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1.)

## 제8장 학생활동

**제37조(학생회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제38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교육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학생의 건전한 집단활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행사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총장은 학생집단활동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위(가해)자 및 연대책임자(교수, 학생)에 대해 관련 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42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42조의2(학생상담)** 학생은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와 상담을 받아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의3(언론활동 보장)** 대학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언론활동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언론활동 및 보장을 위하여 언론기구를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처벌) 이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학생(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은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 제 9 장 규율과 상벌

제45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국가문화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제46조(포상) 총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학생
  2.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학생
-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교내봉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9.1.)
- ③ 총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0.31.)

### 제10장 등록금

제48조(등록금) ①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등록 시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학기 단위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로 한다.

- ②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④ <삭제>

제48조의2(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48조의3(등록금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3. 재적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6. 재학 중인가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개정 2016.10.31.)

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6.05.01.)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③ 제17조에 의해 입학이 취소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④ 장학금수혜자에게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금 총액에서 장학금 수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②항에 의해 반환한다. 다만,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장학금 수혜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9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①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제①항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11장 장학금

제50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평균 C+학점 혹은 75점 이상인 학생으로서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개정 2013.9.1.)
2.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학교 및 학과 발전에 공로한 학생
- ②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균휴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9.1.)
-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대신한다.
- ④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의 제한을 두지 않는 장학금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의2(장애학생 지원) 총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장학 및 수업, 학생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51조(교수회)** ① 우리 대학에 교수회를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52조의1(교무위원회)** ① 우리 대학의 전문학사 과정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본부장, 교육지원처장, 스쿨원장,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5.01.)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진급, 졸업(명예졸업 포함)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장학사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8.1.)
6.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삭제>

**제52조의2 (대학평의위원회)** ① 우리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③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52조의3(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삭제>

**제52조의4(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삭제>

**제52조의5(교원양성위원회)** ① 우리 대학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은 교원양성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사항
2. 교원자격 관련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운영 사항
3.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제52조의6(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우리 대학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④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사항은 등록금 심의위원회규정에서 정한다.

### 제13장 직 제

**제53조(교직원)** ① 우리 대학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의 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12.8.1.)

② 교원의 임용 및 업적평가 등 교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54조(직제)** ① 우리 대학에는 기획본부, 교학본부, 교육지원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개정 2014.3.1.) (개정 2015.3.1.) (개정 2016.05.01.)

② 각 본부·처·팀에 (부)본부장·처장·팀장을 보하고, (부)본부장·처장·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6.05.01.)

③ 각 본부·처·팀·스쿨행정실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5.01.)

④ 각 스쿨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책임교수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교양교육의 편성과 운영을 위해 관련 스쿨로 리케이온(교양교육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0.31.)

### 제13장의1 학과 통폐합

**제54조의1(학과 통폐합)** 학과의 통폐합은 대학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르며,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법인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14장 부속기관

**제55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개정 2013.3.1.)

(개정 2014.3.1.) (개정 2015.3.1.) (개정 2016.3.1.)(개정 2016.05.01.)

1. 미래원
2. 산학협력단



- 3. HRD센터
- 4. 창업보육센터
- 5.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6. 입학홍보센터
- 7. 청강뮤지엄(만화역사박물관, 청강기념관, 청강갤러리)
- 8. LINC사업단
- 9. 학교기업
- 10. 경기계임상융화지원센터
- 11. 이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12. 입학홍보센터
- 13. 청강모바일아카데미
- 14. NCS운영센터
- 15. 창업교육센터
- 16. 교수학습지원센터
- 17. 학습역량지원센터
- 18. 학생서비스센터
- 20. 취업정보센터
- 21. 현장실습지원센터
- 22. 문화정보센터(도서관, 만화영상도서관, 출판부)
- 23. 평생교육원
- 24.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 25. 학생진로상담센터
- 26. 관리센터
- 27. 전자계산소
- 28. 청강공간디자인센터
- 29. 예비군대대
- 30. 교목실
- 31. 연구소(에이징연구소, 차세대콘텐츠연구소)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의1 학교기업**

**제55조의1(학교기업 설치)** ① 학교에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교기업이라 한다. (별표3 참조)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대학의 교지(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③ 학교기업은 학과와 연계하여 사업종목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별표4 참조)

**제55조의2(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25%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55조의2(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25%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방학 중 현장실습교육을 4주(16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2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학기 내 교과 중 현장실습 운영 시 15주(160시간)로 운영하며 전공의 특성에 따라 부여 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

③ <삭제>

④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

**제55조의3(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교직원의 연 보수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②항,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의4(도서관 운영)** ①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 1. 대학도서관진흥법,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학도서관 운영사항
- 2.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 훈련시간에 관한 사항
- 4. 대학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3.1.)

**제15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

**제56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성희롱 예방 및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

**제57조(성희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개정 2016.3.1.)

**제58조(적용범위)** 대학 학칙을 적용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59조(기관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제60조(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상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성희롱 제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상담센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제61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상담센터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희롱 관련 법령
- 2.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상담센터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제62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센터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3조(상담 및 조사)** ① 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상담센터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제6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은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③ 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상담위원회의 토의에 부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8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

를 종결한다.

**제69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총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장 자체평가

**제70조(자체평가)** ① 총장은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 공식정보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가능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7장 학칙 제·개정절차

**제71조(학칙 제·개정안의 공고, 의견제출, 심의, 공포)** ① 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상으로 한다.

③ 우리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반 학칙의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포 및 시행한다.

### 제18장 부칙

**제7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네트워크과의 재적생은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멀티미디어제작과, 컴퓨터서비스과, 표현디자인과, 식품공업과의 재적생은 개편된 재적생으로 본다.

제2조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청강문화산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는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그래픽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건강식품과학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미디어영어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도자디자인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공연산업계열 무대공연전공, 식품생명과학과, 비즈니스영어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리빙세라믹디자인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도자디자인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컴퓨터네트워크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모바일네트워크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인터넷비즈니스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e비즈니스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개정 2012.8.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만화창작과의 경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적용하며,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모바일네트워크과 재적생은 사이버보안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소프트웨어과, e-비즈니스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1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정보과, 물류유통정보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컴퓨터게임과의 경우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적용하며,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한다.

제3조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3D그래픽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애니메이션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은 고시일(2009.10.7)이후에 복학한 학생에 한하며, 고시일 이전에 복학한 학생은 3년제 교육과정을 운영 중임에도 2년제로 졸업하여야 한다.

제3조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씨피스디자인과의 재적생은 패션디자인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이 학칙 시행당시 씨피스디자인과 2학년 재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도자디자인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학과 소속으로 변경 할 수 있다.

③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정보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학과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학칙 시행당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도자디자인학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판단에 따라 다른 학과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사이버보안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사이버정보보안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중국IT비즈니스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글로벌IT비즈니스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개편 및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학과 개편 및 폐과로 인한 다른 학과로의 소속 변경 시 유아교육과로의 소속변경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개편 및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개정 2013.3.1.)

2011학년도		2010학년도	비 고
스 쿨	모집단위	학 과	
콘텐츠	애니메이션전공	애니메이션과 디지털영상디자인과 3D그래픽과	
	만화창작전공	만화창작 만화일러스트레이션과	
	컴퓨터게임전공	컴퓨터게임과 e스포츠게임과	
에코라이프	에코스타일리스트전공	플로랄디자인과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푸드스타일리스트과	
	에코디자인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캐릭터산업디자인과	
	식품영양전공	식품과학과	
패션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패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과	
뮤지컬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써피스디자인과	
	뮤지컬연기전공	뮤지컬과	
모바일	무대미술전공	무대미술과	
	이동통신전공	이동통신과	
	스마트폰전공	-	
2011 모집정지	모바일보안전공	사이버정보보안과	2013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학과 유지
	-	관광영어과	
	-	물류유통정보과	
2010 모집정지	-	글로벌IT비즈니스과	2012학년도까지 학과 유지
	-	도자디자인과	
	-	컴퓨터정보과	
2009 모집정지	-	써피스디자인과	
	-	3D 그래픽과	

- ① 스쿨단위로 학과를 재편함에 따라 기존 학과는 「학과개편 현황」 내용대로 소속을 변경한다.
- ② 2011학년도에 모집을 정지하는 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13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학과를 유지한다. 단, 2009학년도에 모집을 정지한 3D그래픽과 재적생의 경우 2011학년도 2학년 재학생과 2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3D그래픽과 또는 애니메이션과를 선택 할 수 있고, 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개정 2013.3.1.)
- ③ 2010학년도에 모집을 정지한 써피스디자인과 재적생의 경우 패션디자인전공 또는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재적생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을 변경한다.
- ④ 모집을 정지하는 전공(과)의 복학생의 경우 전공(과)유지 기간 이후에는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고, 전공(과) 유지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해당학기 전공정원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전공(과)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유아교육과로는 교원수급 적정인원 유지 및 교직원 이수 자격부여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소속을 변경 할 수 없다. (개정 2013.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집단위 명칭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전공, 과) 변경 명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에코스타일리스트전공의 에코가드닝 코스 재적생은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재적생으로, 카페매니지먼트 코스 재적생은 카페&베이커리전공 재적생으로, 핸드메이드크라프트코스 재적생은 에코디자인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게임전공 재적생은 게임전공 재적생으로, 카페&베이커리 재적생은 외식경영 전공 재적생으로,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재적생은 스타일리스트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에코디자인 전공 재적생의 경우 콘텐츠스쿨로 소속을 변경하며,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15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복학생의 경우 전공(과) 유지 기간 이후에는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고, 전공(과) 유지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해당학기 전과정원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전공(과)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3.9.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뮤지컬연기전공, 무대미술전공 재적생은 뮤지컬스쿨 재적생으로 이동통신전공 재적생은 모바일통신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에코디자인 전공 재적생의 경우 게임콘텐츠스쿨로 소속을 변경하며, 해당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15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복학생의 경우 전공(과) 유지 기간 이후에는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고, 전공(과) 유지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해당학기 전과정원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전공(과)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5.3.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9.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3.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2016학년도 모집을 정지한 스마트폰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을 졸업 할 수 있도록 2018학년도 1학년 복학생까지 전공을 유지한다. 이 기간에 복학하는 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스쿨 내 희망하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고, 전공 유지 기간 이후에는 해당 학기 전과 정원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6.5.1.)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전문학사 학위명칭)(개정 2013.3.1.)(개정 2015.3.1.)

종 별	해당전공(과)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창작전공
게임콘텐츠전문학사	게임전공
조리전문학사	조리전공
식품영양전문학사	식품영양전공
외식경영전문학사	외식경영전공
산업예술전문학사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디자인전문학사	패션디자인전공
스타일리스트전문학사	스타일리스트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뮤지컬스쿨
공업전문학사	모바일통신전공, 스마트폰전공, 모바일보안전공
스마트콘텐츠전문학사	스마트미디어전공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별표 2(학사 학위명칭) (개정 2013.3.1.)

종 별	해 당 학 과
문화콘텐츠학사	만화애니게임학과
공연예술학사	공연예술학과

별표 3(학교기업명칭)

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CCRC(Chungkang Creative Research Center)로 한다.
2.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쿨투라(Cultura)로 한다.

별표 4(학교기업 사업내용)

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CCRC는 애니메이션스쿨, 게임콘텐츠스쿨과 연계하여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영상, 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산업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 기술 서비스'를 사업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3.9.1.) (개정 2015.3.1.)
2. 쿨투라는 푸드스쿨과 연계하여 '조리, 푸드스타일링 및 화훼'등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3.3.1.)

[별지 제 1호]

제 호

# 학 위 증 서

심 생 년 월 일 명 :  
 스 울 - 권 공 : (년 제)  
 전 공 코 스 :  
 부 전 공 보 스 :

위 사람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전공  
 ○년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고등교육법 제50조  
 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학위등록번호 : 청강 - ○○○○ - ○○○○

[별지 제 1-1호]

제 호

# 학 위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과  
○년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고등교육법 제50조  
에 따라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학위등록번호 : 청강 - ○○○○ - ○○○○

[별지 제 1-2호]

제 호

# 학 위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과 ○년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고등교육법 제50  
조의 2에 따라 ○○○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학위등록번호 : 청강 - ○○○○ - ○○○○



[별지 제 2호]

제 호

# 수료증서

성명 :  
 생년월일 :  
 전공소정 : (년제)  
 전공코스 :  
 부전코스 :

위 사람은 본 대학 전공 소정의  
 전공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별지 제 2-1호]

제 호

# 수료증서

성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문학사 전공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별지 제 4호]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학과)	
		직급(학년)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학과)	
		직급(학년)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학과)	
		직급(학년)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p>※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p>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 표기)	성희롱의 중지		공개사과		
	징계 등 인사조치		기타		
처리 결과					
<p>※ 관련 자료 첨부(성희롱에 대한 정황, 사진, 녹취록, 기타 등)</p>					